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회사가 일방적인 감봉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정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203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주)○○○ 투어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여행미디어

중 재 부 :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5. 11. 30.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여행미디어 : 『‘대고객 서비스’ 내부 분열』 제하의 기
사 (2005년 11월 22일자 1면)

내 용 : 조류독감과 경기침체 등 잇단 악재로 여
행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F여행사가 일방
적인 감봉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F여행사가 ‘대고객 서비스’라는 명분을 앞세
워 오는 12월부터 월급의 20%는 ‘대고객 서비스’ 모
니터링을 통과한 직원에게만 돌려준다고 통보하자 직
원들은 회사의 일방적인 감봉 통보에 이해할 수 없다
는 입장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여행미디어는 지난 2005년 11월 21일 타블
로이드 1면과 2005년 11월 22일 신문 1면에 『‘대고객
서비스’ 내부 분열』이라는 제목으로 F여행사가 일방
적으로 20% 감봉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
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20% 감봉에 대한 내
용은 노사협의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지급을 전제로
한 기본급 20% 지급 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고객 서비스’ 교육이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보도하였
으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취지라는 것이 확
인되어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 제 목 : 정정보도문
- 내 용 : 본지 지난 12월 22일자 『‘대고객 서비스’
내부 분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F 여행사가 일방
적으로 20%의 감봉조치를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보
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F 여행사는 사전
에 직원들과 감봉분에 대해 협의하여 기본급 20%의
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위 합의일로부터 최초로 발행하는 여행미디어 타블로이드 판(12일자) 2면과 대판 2면(13일자)에 상자기사로 각각 보도하되, 제목(정정보도문)은 조정대상기사(타블로이드 판)의 소제목(F여행사 일방적인 '20% 감봉')과 같게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여행미디어 :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들이 제조·납품하는 소방용 발광선이 인테리어용품과 다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PR 보도)

사건번호 : 05서울조정228
 청구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박○○ 외 2인
 피신청인 : SBS-TV
 중재부 : 서울제3중재부
 접수일 : 2006. 12. 26.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 하 (손배)

보도내용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5년 11월 15일 20:00)

내 용 : ▷ 앵커 : 집안을 꾸미는 장식용품이 소방구조 장비로 사용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

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2월 3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지하철 화재. 이 참사를 계기로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화재 현장에서 효과적인 구조작업을 하기 위해 전국의 소방서와 지하철 역사에 '라이트 라인' 이란 장비가 보급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이 장비를 이렇게 허리춤에 묶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피할 방향을 알려주거나, 화재 현장에 갇힌 사람들이 붙잡고 빠져 나올 수 있는 밧줄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인테리어용. 이스라엘과 중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나 자동차 뒷유리 장식용으로 쓰인다고 돼 있습니다. 제품의 인장 강도를 실험해 봤습니다. 중국과 이스라엘산 인테리어 제품은 30kg 내외의 힘을 받으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소방용 라이트 라인은 100kg이 넘는 힘을 받아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용은 성인 남자가 힘껏 잡아당기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라이트 라인이 끊어지면 줄을 잡고 빠져 나오던 사람들이 엉켜 넘어지면서 큰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11월 15일자 「SBS8뉴스」에서 '장식용 끈으로 인명구조?' 의 제목으로, 소방서 및 지하철 역사의 소방 구조 장비인 라이트 라인 관련하여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제품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자동차 뒷유리 장식용 인테리어용으로 쓰이며, 이스라엘산 인테리어 제품은 30kg 내외의 힘을 받으면 끊어지고, 소방용 라이트 라인은 100kg이 넘는 힘을 받아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인테리어용"과 "소방용"이라 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사실은 이스라엘 제조사에서는 제품을 인테리어용이나 소방용 등으로 용도

를 구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산 인테리어용이라 했던 제품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한국의 소방 구조대원들의 요구에 따라, 지하철과 같이 지상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화재시 농염으로 가득찬 밀폐된 공간에 적합한 라이트 라인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고회도 발광선이며, 소방용 라이트 라인이라 했던 제품은, 고회도가 아닌 일반 제품에 제3의 업체가 피복만 굵게 입혀 인장력만 조금 높인 후 소방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써 한국의 라이트 라인 장비로서는 부적합한 제품이며 오히려 인장력을 높이기 위해 피복을 필요이상으로 굵게 만들면 핵심기능인 밝기가 급감하여, 화재시 피난을 유도해야 하는 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신청인 중 박○○에게 100,000,000원, 그 외 2인에게 각각 30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

합의사항

• 피신청인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 보도를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8뉴스' 프로그램에 합의일로부터 2주 이내(1월 16일까지)에 조정대상보도와 동일한 시간 동안 방송하되 구체적 내용은 당사자 간에 협의한다.

아 래

가. 이스라엘제 이엘와이어는 인테리어 제품과 소방용 제품의 구별이 없다.

나. 라이트 라인의 기본 용도와 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다. 신청인 제품의 장점과 신청인 제품에 대한 신청인 측의 평가를 충분히 설명한다.

라. 신청인 제품은 화재현장의 소방대원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마. 신청인 측이 새로 개발한 제품이 특허출원 중인 사실

• 신청인은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SBS-TV : 「SBS8뉴스」 프로그램 (2006년 1월 7일 20:00)

내 용 : ▷ 앵커 : 올 겨울 특히 대형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3년 2월 대구 지하철 화재. 불이 꺼진 지하철 역사는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했고, 350명이 연기에 질식사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소방관들이 연기가 가득찬 계단을 내려갑니다. 어둠과 연기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곳에서 빛을 내는 유도선이 바닥에 깔립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면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춰야 하며, 피난 유도선을 따라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발광 반도체를 이용한 제품으로 쉽게 휘기 때문에 구석구석까지 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정○○(동대문소방서 구조대원) : 정전이 되고 연기가 가득한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이 라이트 라인을 이용해 출입구로 대피하도록 준비한다. 시민들은 비상상황에서 이 줄을 따라 대피해야.

▷ 기자 : 짙은 연기에도 길 안내가 가능할 만큼 밝아 대구지하철 화재 이후 전국 소방서에 보급됐습니다. 일본의 교토소방청에도 11대가 수출돼 시험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우○○(개발업체 관계자) : 대구 지하철 사고 이후 잘 휘면서 더 밝은 제품에 대한 요구 때문에 공급, 내구성, 내연성 강화된 제품 특허 출원중이다.

▷ 기자 : 소방당국은 불이 나면 연기를 피해 몸을 낮춰야하며, 피난 유도선을 따라 침착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신청인이 자신의 치부를 위해 주차장 사용을 막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광주조정2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김 ○ ○

피신청인 : 나주투데이

종 재 부 : 광주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12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나주투데이 : 『광주은행, 의료보험공단 민원인 불편 심각』 제하의 기사 (2005년 12월 19일자 7면)

내 용 : 광주은행과 의료보험공단이 입주한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이 시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중략)

이곳은 건물소유주가 광주은행과 의료보험공단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김모 씨 소유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5년간 토지사용료와 주변정비를 하고 승낙서를 받았다.

그러나, 의료보험공단이 입주한지 불과 10여일이 지나서 김모 씨가 돌연 주차장으로 사용을 승낙한 토지에 흙을 야적해 차량주차를 원천 봉쇄했다.

이로 인해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

고 있으며 의료보험공단 출입구마저 막아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인근 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에 몸살을 앓고 있다. (중략)

그러나, 김모 씨가 자신의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을 승낙했기 때문에 건물신축이 이뤄진 것으로 미뤄 김모 씨의 일련의 행동은 납득할 수 없는 선을 넘어 다수의 시민을 불모로 자신의 치부를 노리려는 알팍한 상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 지난 12월 20일자 『광주은행, 의료보험공단 민원인 불편 심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주은행과 의료보험공단이 입주한 건물의 토지 소유주가 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에 흙을 야적해 차량주차를 원천 봉쇄해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인근 도로가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토지소유주 김모 씨의 행동은 시민을 불모로 자신의 치부를 노리려는 알팍한 상술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김모 씨의 주차장 폐쇄조치는 건물 소유주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즐기치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해진 조치로서 사건의 발단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건물 소유주에 있는 것으로 토지 소유주의 일방적인 폐쇄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했음을 밝혀드립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나주투데이 2006년 2월 6일자 7면에 게재하되 제목(반론보도문) 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 크기로 하고, 내용활자크기는 이 건 조정대상기사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신청인이 피신청인측 김OO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2005. 12. 21.자 고소건은 이를 취소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나주투데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6
일자 7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

본지는 지난 1월 2일자 『“잘 옳겼다” 소문나려면
현 직장서 더 잘하세요』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대형서점의 ‘자기계발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직장인들 사진을 참고자료로 이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진 속의 인물들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지 서점에서 책을 고르
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성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
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4,000,000 원

합의사항

- 제 목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 내 용 : 본 AM7은 2006년 1월 2일자 ‘이직의 성공
조건’의 기사에서 대형서점의 자기계발서적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직장인들의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사진 속의 인물들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과는 무
관함을 밝힙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AM7 30면 매주 월요일
일터란의 우측 하단에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제목은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2호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은 같은 기사의 본문 활자 크기로 하여 2006년 2월 20
일까지 게재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오십만 원을 2006년 2월 28
일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기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
지급 금액에 대하여 2006년 3월 1일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이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 된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정정보도 · 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36
청 구 명 : 정정 · 손해청구
신 청 인 : 이 O O
피신청인 : AM7
중 재 부 : 서울제15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23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AM 7 : 『“잘 옳겼다” 소문나려면 현 직장서 더 잘하
세요』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2일자 30면)
내 용 : 새해를 맞아 서울 시내 대형서점의 자기계발
서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직장인들. 이들 직
장인들에게 ‘이직’은 매우 현실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합의사항 이행결과

A M 7 : 『언론중재위 조정합의문』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20일자 30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청정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45

청 구 명 : 정정청구

신 청 인 :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대행 송 재 성)

피신청인 : 동아일보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 2006. 1. 31.

처리결과 : 합 의

보도내용

동아일보 : 『혼혈인은 몇 명? 아무도 모른다』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13일자 A3면)

내 용 : 한국에는 혼혈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이다. 혼혈인 문제를 ‘나 몰라라’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정부가 통계를 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정부는 1978년부터 실시한 일부 혼혈인에 대한 생계비 및 학비 지원을 1998년 중단했다. 1998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은 이 제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 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는 지난 1월 13일자 3면 『혼혈인은 몇 명? 아무도 모른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는 1978년부터 실시한 일부 혼혈인에 대한 생계비 및 학비 지원을 1998년 중단했다. 1998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혼혈인은 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는 혼혈인에 대해서 생활보호법과는 별도로 생계, 중·고등학생 학비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다가 2000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합의사항

- 제 목 : 바로잡습니다
- 본 문 : 본지 지난 1월 13일자 기사에서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혼혈인 관련 지원정책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으나, 사실확인 결과, 보건복지부는 혼혈인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정책은 없으나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통합하여 혼혈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음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동아일보 2면에 2006년 2월 17일까지 보도하되, 제목(바로잡습니다)크기와 활자는 사진식자 12.5포인트 고딕체로 하고 본문은 조정대상기사의 본문과 같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동아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06년 2월 17일자 A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